구 분 면제･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･감면의 방법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(조특법§6)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(’18.5.29. 이후 수도권 내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포함),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 ㉡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 기업 으로 확인받은 기업 ㉢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-(기본감면)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4년간 법인세 50% 감면 \*’18.5.29. 이후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 : 5년간 100% \* ’18.5.28. 이전 청년창업 중소기업：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2년간 75%, 그 이후 2년 50% \*’18.1.1. 이후 창업한 대상 기업 중 신성장 서비스업 영위기업 :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연도와 그 후 2년간 75%, 그 이후 2년 50% \*’18.5.29. 이후 창업한 연간수입금액 4.8천 만원(’22.1.1. 이후 8천만원) 이하 기업 : 수도권 외 : 100%, 수도권 내 : 50% -(추가감면) 전년대비 고용증가율× 1/2 (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충족) ②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 감면(조특법§7) \* 2005.1.1.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 (본점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) -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구분 소재지 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 제조업 등 20 도소, 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30 도소매,의료업 10 통관대리 등 15 중 기 업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 외 제조업 등 15 도소매의,료업 5 통관대리 등 7.5 (감면한도) 1억원 \* 상시근로자 감소 시:1억원-1인당\*5백만원 - 알뜰주유소에서 발생한 석유 판매소득 \*’22.1.1.-’23.12.31.까지 - 소기업 20% - 중기업:수도권 외：15% 수도권 내：10% ③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(조특법§12①,③) - 특허권, 실용신안권, 기술 비법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- 중소･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-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% -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25% ④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(조특법§12의2) -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 기업 및 연구소기업 - 소득 발생 후 3년간 100%, 그 후 2년간 50%